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

(신현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4
----------	------

발의연월일 : 2014. 1.

발 의 자 : 신현환, 안병배, 이재병,
정수영, 김병철, 전용철,
전원기 의원
(찬성자 : 9인)

1. 제안이유

노후되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 및 폐·공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붕괴의 위험뿐 아니라,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각종 쓰레기 적치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사전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후되어 위험하게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각종 붕괴사고 및 화재 등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빈집”, “소유자 등”, “사업시행자”, “위험한 상태”, “긴급안전조치”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
(안 제3조)
- 라. 빈집의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빈집 전수조사 및 시장에게 보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마. 시장 및 구청장은 매년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한 빈집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안 제5조)

- 바. 빈집이 발생할 경우 빈집관리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업으로 발생한 빈집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사. 빈집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출입문 폐쇄, 유지보수, 지도·권고 및 CCTV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아. 위험상태의 건축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자. 소유자의 동의나 매입 등을 통하여 주차장, 주민 쉼터 등으로 빈집의 활용사업을 모색토록 규정함(안 제9조)
- 차. 빈집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건축법」 제81조
-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82조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비 조례」 제4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합 의 :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화되어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각종 붕괴사고, 범죄 및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라 함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위험한 상태”라 함은 건축물이 유지와 보수를 받지 않아 붕괴되거나 건축재료가 비산될 우려가 있는 상태와 화재나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를 말한다.
5. “긴급안전조치”라 함은 건축물의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재료 등의 비산이 있을 경우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유자 등의 책무)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조사 및 보고) ①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에 관한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6월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7월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매년 빈집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빈집이 발생될 경우,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 등 적정할 조치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빈집 관리는 당해 빈집의 관리부서에서 관장한다.

제7조(안전관리 및 조치) ① 구청장은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철거 시까지 해당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고,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 또는 보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공가 및 건축물이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에 임박하고 소유자 등이 지도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긴급안전조치를 행함에 있어 군·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빈집의 활용사업) 구청장은 지역적 활용가치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나 매입 등을 통하여 주차장, 주민 쉼터, 지역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시장 및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등 빈집

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의 안전관리
2. 빈집의 긴급안전조치
3. 빈집의 활용사업
4. 그 밖에 빈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폐·공가관리 카드

▣ 공가관리 현황						
소유자 현황	주소					
	성명					
	연락처					
폐공가 현황	위치		구조			
	발생시기		층수			
	발생사유		용도			
	해소전망		준공일			
폐·공가발생 기초조사 항목			점검결과		조치계획	
▣ 공가관리 현황			O,×	내용		
관리상태	단전,단수,가스차단 여부					
	분뇨수거,폐가구 등 방치여부					
	개구부 폐쇄여부					
환경저해 요인	노숙인 등 출입여부					
	쓰레기 무단투기,적치여부					
	화재발생 등 위험발생 여부					
건축물 위험요인	담장의 붕괴 여부					
	지붕재,외부벽체 탈락 여부					
	건축물의 붕괴등 구조적 위험여부					
관리자 연락처	구분	성명	전화번호	구분	성명	전화번호
	소유자 등		☎	000		☎
	담당부서		☎	담당자		☎

현황사진

위치도

종합의견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p>관계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 명령 등) ○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5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 ○ 제8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5조 (기금의 관리·운용)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관련자료</p>	

관계법령 발췌사항

□ 건축법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전문개정 2008.10.29]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하생략)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④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82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국장
2.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관련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폐쇄 후 1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잔액 증명과 함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비기금은 법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중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2-4-9>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부담 [제1호에서 이동 2012-4-9]
3. 법 제63조제3항 및 영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보조 및 용자 [제2호에서 이동 2012-4-9]
4.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 참여 전문가 수당 <신설 2012-4-9>
5.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2-4-9>
6. 국고용자금 상환 [제3호에서 이동 2012-4-9]
7. 정비사업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 [제4호에서 이동 2012-4-9]
8.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빈집관리, 방법 및 거주자의 생활안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구의 사업비 보조 [제5호에서 이동 2012-4-9]
9. 그 밖에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교육 지원 및 주거환경정책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신설 2012-4-9>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빈집 실태 조사

제4조(빈집조사 및 보고) ①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에 관한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6월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빈집 관리 및 지원

제10조 (비용의 지원) 시장 및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등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의 안전관리
2. 빈집의 긴급안전조치
3. 빈집의 활용사업
4. 그 밖에 빈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빈집실태조사 : 200,000천원

- 4,000천원/년 × 10개 군·구 × 5년 = 200,000천원

2) 빈집관리 및 지원사업 : 2,300,000천원

- 빈집 폐쇄 및 안전휨스 설치 등 관리사업
 - 1,000천원/건 × 100건 × 5년 = 500,000천원
- 빈집철거 및 폐자재 처리비용 지원
 - 10,000천원/건 × 120건(5년 합계) = 1,200,000천원
- 쉼터 조성 등 빈집 활용사업
 - 100,000천원/건 × 2건 × 3년 = 60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2,500	500	500	500	500	500
재원별	시비	2,500	500	500	500	500
	군구비	-				

다. 제원조달방안 : 시비(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소계						
세 출	빈집실태 조사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관리사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빈집철거	360,000	360,000+	160,000	160,000	160,000	1,200,000
	활용사업	-	-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소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 비	소 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일반회계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